

2020년 어린이집 평가지표 온라인 교육

- 실제편 -

- ▶ 영역 3. 건강 안전
- ▶ 영역 4. 교직원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BUSAN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영역 3.

건강 · 안전

평가지표

-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 3-2. 급·간식
-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 3-4. 등·하원의 안전
-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영역 등급기준

우 수 - 5개의 평가지표 중 '우수' 지표가 4개 이상 (필수 포함)
보 통 -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 5개의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 지표가 1개 이상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보육실 청결>



<실내외공간 청결>



<놀잇감 및 활동자료청결>



<화장실 청결>



<기저귀 깔이대 청결>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환 기>



<공기청정기>



<채광 및 조명 적정 관리>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Q. 3-1-1 기저귀 갈고 나면 기저귀 갈이대를 꼭 알코올로 소독해야 되나요? 물티슈로 닦아도 되나요?

A. 기저귀 갈이대는 사용 전후 소독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독제(알코올 등)를 뿌린 후 닦아내거나 소독이 가능한 항균 물티슈 등으로 닦아내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Q. 3-1-1 쌍둥이형제는 하나의 침구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A. 낮잠을 자는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침구관리를 위하여 **개별 침구 (이불, 요, 베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쌍둥이라 하더라도 침구는 각각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색과 모양의 침구를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이름 등 개별표시를 하여 구분,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Q. 3-1-1 어린이집 실내공간에 대한 자연채광을 평정하는 기준에 어떻게 되나요?

A. 보육실 및 실내 공간(복도, 유희실, 실내놀이터 등)은 영유아의 건강과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위해 자연채광이 충분하여야 합니다. 창문의 2/3 이상이 불투명 썬팅지로 부착되어 있거나, 가구나 적재물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에는 자연채광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정합니다. 또한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하루 종일 햇빛을 가리는 경우에도 채광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평정되오니, 채광을 차단해야 하는 시간(예:낮잠시간) 외에는 자연채광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Q. 3-1-1 하루일과 중에 공기청정기는 항상 작동하고 있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의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거나 '황사'등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 수 없어 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육실에 창문이 없는 경우 공기청정기를 작동하고, 보육실 문을 자주 열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1-2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창문보호대 설치>



<온수조절 장치>



<샤워기 줄 안전관리>



<전선줄 관리>



<안전문 설치>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1-3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자료와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놀잇감 관리>



<잠금장치 사용>



<3.5cm이하 놀잇감 관리>

3-2 ▶ 급 · 간식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illegible]

서식 식품알레르기 질환 지침

❖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 알레르기는 계란이나 우유, 땅콩, 매밀 같이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에 신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식품을 먹음 때마다 증상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가려움, 두드러기 같은 약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만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급격한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알레르기는 성인보다는 유아기, 아토피 기에 더 빈도가 더 높으며, 소아기는 성인의 약 4~8%가 이런 증세를 나타냅니다. 보통은 성인이 되면서 알레르기는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평생 특정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살기도 하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식품 알레르기의 반응시간**
식품 알레르기는 매우 소량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고도 몸에 묻거나 공기 중의 성분으로 흡입한 후에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 발현 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수 일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 **식품 알레르기 증상**
식품 알레르기는 신체가 나타나는 부위를 기준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대략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부 위	증 상
입	가려움 따끔거림 입술, 혀, 입이 부풀어 오름
피 부	가려움 부어짐, 푸드러짐 괴물이나 피부가 부풀어 오름
소화기	구토 설사, 메스꺼움 복부경련
목	목이 조여옴 목이 쉼 기침
폐	숨이 가쁨 반복 기침, 천식
심 장	저혈압 기절 항맥빠짐 일과과 피로가 두드러게 변함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대처 방법
- 00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어떤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
하거나 제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어린이
있으므로 급, 간식 제공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부모님
가정에 사전 배부해 드리고, 잘 점검하시어서 원으로 입
배식에 특별히 주의할 기용이 있습니다.

😊 식품 알레르기를 주로 유발하는 식품들



☺ 알레르기 식품별 대체 식단

식품	식품별 대세 식품
계란	• 과다한 케이크 등 기초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흰살생선 스테이크 돼지고기, 두부 등으로 대체
우유	• 냉지, 두부, 우유로 대체, 식재료 식품에 함유된 칼슘은 콩을 대체 • 중요한 칼슘 공급이 어려울 경우 칼슘제 복용을 고려
생선	• 장기간 저온하는 경우 비리딘 섭취가 필요 • 생선 오일 • 비리딘은 생선 표고버섯, 우비버섯으로 대체
고기	• 고기를 저온하는 경우 철 함유 저지방 대신 • 콩 대체할 수 있음 • 철분이 많은 콩고기, 생선고기 대체, 철분 중독을 고려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
콩	• 콩을 이용한 제품은 많기 때문에 많은 콩과 필수아미노산이 들어간 완제품을 취급하고자 함 • 암치, 치즈, 고등어 치즈, 돼지고기 치즈 등으로 대체
달걀	• 소량으로만 사용하고 증상이 심할한 경우, 달걀로 주의가 필요 •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다른 견과류와 다른 반응도 확인해 볼 것

<식품알레르기 질환지침>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Q. 3-2-1 급식운영일지 작성 시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를 기록하게 되는데,
결석한 영유아를 제외하고 작성해야 하는가요?

A.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한 **급·간식의 조리, 배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록·관리**하셔야 합니다. 결석한 해당 영유아의 급·간식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제공기록에 대해 평가하지 않습니다.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 ·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Q. 3-2-1 가정에서 영아의 이유식을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영아용 식단에 따라 이유식을 제공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은 재원하고 있는 영아의 월령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영아용 식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유식을 준비하여 보내 주시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계획한 식단에 따라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Q. 3-2-1 사전에 수립된 식단과 실제 제공된 급간식이 다를 경우에는 운영일지에 제공기록을 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급·간식에 대한 식단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제공한 후 관련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에 식단 변경 유·무에 상관없이 **운영일지** 또는 **보육일지**,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매일 **급·간식에 대한 제공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Q. 3-2-1 운영일지에 제공된 급·간식이 식단과 같으면 식단 참조로 적어도 되나요?

A. 급·간식에 대한 제공기록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식단대로 제공하여 변동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식단 참조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3-2 급 · 간식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위생적인 복장 >



< 조리 전 손 씻기 >



< 마실 물, 우유 관리 >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Q. 3-2-3 영아반 개인물통은(만 0세) 아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원할 때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쉬운 곳 (보육실, 보육실이 위치한 같은 층의 복도)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스스로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준비해두어 영유아가 원할 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Q. 3-2-3 급·간식 전후로 책상을 행주 또는 물티슈로 닦아도 되나요?

A. 교사는 급·간식 전후로 **청결한 행주**를 사용하여 식탁(책상)을 닦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 상황에 따라 행주 대신 물티슈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3-1 손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교사와 영유아가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 반드시 손을 씻음>



<모든 영유아는 점심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음>

3-3-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주요 변경 내용 3-3-1

- ①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 ② 영유아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신설내용

- ①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 음식을 다루기 전, 바깥놀이 후, 변기 사용 후, 배변지도 후 (기저귀 갈이 등)
- ② 영유아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 음식을 먹기 전, 바깥놀이 후, 대 소변 이후
 - <교사는 영유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손 씻기를 지원함>**
 - 유아의 경우 스스로 손 씻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관리함
 - 영아의 경우 옆에서 지켜보며 손 씻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주고, 개별 영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도움을 제공함

3-3-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Q. 3-3-1 유아가 손 씻기 한 후 유아 개별 수건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A. 지표 상 개별수건을 꼭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건 사용 시 **청결히 관리 유지**가 이루어지면 공동 수건 사용도 가능합니다.

3-3-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Q. 3-3-1 보육교사는 투약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데 영유아가 여러 명일 때 영아 한 명 당 중간 중간에 손을 씻어야 하나요?

A. 교사가 영유아에게 **투약 전 손을 씻는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여러 원아에게 약을 투약할 경우 중간 중간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손 청결 관리가 이루어진 후 투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교사는 음식을 다루기 전, 바깥놀이 후, 변기 사용 후, 배변지도 후(기저귀갈이 등)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3-3-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Q. 3-3-1 기저귀 갈이를 연속적으로 할 경우 손소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위생장갑을 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기저귀 갈이 시 위생장갑 착용 유무는 평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기저귀갈이 후 기저귀 갈이대 소독과 교사의 손씻기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갈이를 연속적으로 해야 할 경우에도 기저귀 갈이 후 매번 기저귀 갈이대를 소독하고, 바로 교사 손 씻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연속적 갈이 상황임을 감안하여 손씻기의 대안으로 중간 시점마다 손 소독제 사용이 가능하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간 시점마다 손 소독제 사용 대신에 위생장갑을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나 동일하게 **마지막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Q. 3-3-1 영유아의 이닦기를 할 때 반별로 1-2개의 양치컵을 공동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A. 칫솔과 양치컵은 **영유아별로 구비**하여 사용 후 깨끗이 헹구어 겹치지 않도록 하여 건조시켜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서식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

1. 질병에 걸려 아픈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 ① 질병에 걸려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가 발견되면 즉시 원장이나 주임 교사에게 보고한다.
- ②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상황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원장이 보살피며 쉬도록 해주거나 보육실 한 공간에서 쉬도록 보육한다.
- ④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고열, 설사, 심한 기침 등)의 경우 보호자와 우선으로 연락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투약의뢰 관련 기록(보호자가 제공한)에 근거하여 투약한다.

2. 사고로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 ① 부상종류(화상, 균열, 멍, 들림 등)와 정도에 따라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질식이나 심한 부상 및 출혈 증례, 이물질 흡입으로 인한 응급상황 시 119나 응급실에 구조 요청한다.
- ③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상황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19 상담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	응급상황이 발생한 위치(0000어린이집, 주소, 이름, 나이, <u>반의</u> 등)
▶	응급상황의 내용(무의식, 무호흡, 안전사고 등)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인원 및 상태
▶	영 유아에게 시급한 응급처치 내용(심폐소생술 등)
▶	필요한 도움 등

상해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탈과상, 베임	▶ 가벼운 상처의 경우 다친 부위를 식염수나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한다. ▶ 물기를 깨끗한 거즈로 닦은 후 상처에 밴드를 붙인다. ▶ 상처의 길이와 크기, 부위 등에 따라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이동 후 치료받는다.
골절, 탈구	▶ 다친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동한다. ▶ 다리를 다친 경우 삼살 높히고 종이 박스나 나무 판 패드 등을 무릎과 발목 아래에 받쳐 고정한다. ▶ 팔을 다친 경우 다친 부위의 위아래 관절까지 부목을 단단하게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화상	▶ 식염수로 화상 부위를 씻고 깨끗한 거즈와 붕대로 부위를 덮은 후 병원으로 이동한다.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

투약의뢰서 내용

투약의뢰서
 햇살반
 [인물사진]
 금일 자녀의 투약을 선생님께 의뢰합니다.

증상	편도염
약의 종류	물약
투약 용량	5cc(흰색)10cc(분홍색) cc/ml
투약 횟수	2회
투약 시간	점심후, 저녁후
보관 방법	냉장
특이사항	

< 투약의뢰 및 보고 >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비상약품을 용도별로 구비하여 유효기관 내 관리>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Q. 3-3-2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비상약품이 있나요? 최소한 구비해야 하는 약품은 무엇일까요?

A. 비상약품의 종류는 어린이집에서 관련 규정과 필요에 따라 구비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 비상약품(의약품 포함)을 구비하고 실외용 비상약품(소독제, 밴드류 등)을 별도로 구비하여 외부활동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Q. 3-3-2 비상약품의 개봉일자를 기록해야 하나요?

A. 비상약품의 개봉일자 기록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내에 구비되어 있는 모든 비상약품에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고, 유효기간을 경과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3 ▶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서식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감염병 관리 수칙

<영유아가 감염병 관리 수칙>

1. 감염병 의심 영유아가 발견되며 즉시 원장이나 주임교사, 사업체, 재단, 시군구에 보고한다.
2. 응급상황일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3.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고열 등)에서는 보호자와 유선으로 연락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미 등원한 경우 영유아들과 격리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원장 등이 보살피며 쉬도록 한다.
4. 병원에서 감염병 진단일 경우 감염병의 종류에 따른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격리기간동안 집단 유행을 막기 위해 등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복귀한다.
5. 원치 후 등원 시 병원에서 발급받은 원치확인서를 원에 반드시 제출 후 등원한다.
6. 원아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 및 물건을 소독하며 방역한다.

〈보육교직원 감염병 관리 순차〉

1.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곧바로 가까운 의료 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2.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킨다.
3. 집단유해를 막기 위해 감염 시 전염기간 동안에는 출근을 하지 않는다.
4. 원치 후 출근 시는 미리 출근 1일 전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병원에서 원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위에 제출한다.

[illegible]

<감염병 관리수칙>



<감염병 관련 안내문>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변경 내용 3-3-3-①

①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관리함

변경전	변경후
※ <u>영아(만0, 1세, 만2세)의 경우, 신체 계측 결과와 소아과의 정기 예방접종 등으로 같음하여 비치 할 수 있음</u>	※ <u>영아의 경우, 신체 계측 결과와 소아과의 정기 예방접종 등으로 같음하여 비치 할 수 있음</u> ※ <u>만5세의 경우, 7차 영유아건강검진까지 모두 실시하였다면 건강검진 실시 주기를 고려하여 평정에서 제외합니다.</u>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Q. 3-3-3 보육실습생, 노인일자리 파견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A. 임용된 보육교직원(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 미임용 보육교직원 중 매일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 어린이집 보육실습생, 어린이집에 함께 거주하는 자,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파견자 등은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보육실습생,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파견자는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변경 내용 3-3-3-②

②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변경전	변경후
대상) 원장, <u>종일제 보육교사</u> , 조리원	대상) 원장, <u>담임교사</u> (<u>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u>), 조리원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 평정 제외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Q. 3-3-3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건강 또는 영양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조리원은 건강 또는 영양 관련 주제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이 가능하며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됩니다.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Q. 3-3-3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및 영양 관련 주제의 보육활동 내용이 일지에 매일 기록되어야 하나요?

A.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 및 영양교육은 **일상적 양육 및 보육활동(바깥놀이, 손씻기와 이 닦기, 수면, 급·간식 시간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보육일지 등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건강 및 영양교육은 각 반별로 현장관찰 월 기준 3개월 이내 실시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3-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Q. 3-3-3 응급처치 동의서에 들어가는 어린이집 지정의료기관이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어야 하나요? 또는 소아 전문병원 이어야 하나요?

A. 의료기관명에는 응급상황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응급실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모가 작성하여 동의한 내용이므로 의료기관 적합 유무는 평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3-4-2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Q. 3-4-2 통합보육시 통합반 또는 연장 보육 전담교사에게 인수인계 되는 영유아에 대한 특이사항 전달방법과 내용에 관한 서식이 따로 있나요? 특이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해당 내용의 평정은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록으로 관리여부는 평정되지 않으나 운영일지 등에 기록하실 수 있으며 원아의 **하루 일과의 특이사항, 건강상태, 부모전달사항, 투약여부** 등의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전달받고 부모에게 전달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3-4-2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Q. 3-4-2 일정시간 자리를 비울 시 책임 있는 성인과 교대하라고 하는데, 영아의 배변훈련을 위해 화장실 갈 때 교사가 동행하면 보육실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사는 활동공간에 **영유아만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합니다.** 교사가 등·하원 지도, 휴게시간 사용 등을 위해 일정시간이상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나 다른 교사와 교체한 후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유 (교사의 화장실 가기, 응급약품을 가지러 갈 때 등)로 인하여 아주 짧은 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원장과 교사가 아니어도 책임이 있는 성인(원장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인계 가능합니다.

3-4-3 등 · 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Q. 3-4-3 영아용 보호장구 중 혹시 카시트를 사용해도 되나요?

A.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 기준 (**W1, W2 또는 0그룹, 0+그룹, I 그룹**)을 충족하는 제품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 때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설) 영아용 보호장구는 등받이에 고정하여 안전하게 장착해야 합니다.

3-4 등 · 하원의 안전

3-4-3 등 · 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서식 차량안전 수칙

운전자 준수사항

운행전

- 차량 외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차량시동 후 엔진 및 각종계기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차량 출발 전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문단속을 확인한다.
-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지 확인한다.

운행중

-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영유아는 주의시킨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교통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 정차는 후방의 차량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는 곳에 한다.
- 운행 중에는 휴대폰,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운행후

- 타이어 압력 및 트러는 양호한가 확인한다.
-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확인한다.
- 차량 내 영유아가 전원 하차하였는지 최종 확인한다.

교사 준수사항

- 차량에는 영유아를 보호 할 수 있는 교사가 탑승한다.
- 차량에 안전하게 탑승시키고 영유아와 교사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차량에는 탑승하는 영아의 수만큼 영아용 보호장구를 갖춘다.
- 차량내 구급상자의 모든 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 차량 내에 비상소화기의 충전상태를 확인한다.
- 차량 출발 또는 후진시키기 전에 영유아가 어디 있는지 살핀다.
- 운행 중에는 영유아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영유아는 항상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한다.

영유아 준수사항

- 차안에서 뛰어다니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
- 유리창 밖으로 손이나 머리 등을 내밀지 않는다.
- 차에서 내릴 때에는 자가 완전히 멈춘 다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
- 의자에 등을 대고 바른 자세로 앉아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 안전석을 발로 차지 않는다.
- 차안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한다.
- 자가 달리고 있을 때에는 차 문을 열지 않는다.

※ 출처 : 이린이집 문서양식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7)

<차량안전 수칙>

서식 통합안전 점검표: 차량 분야 (예시)

1. 통합안전점검표: 차량분야

(점검상태: 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 사항
		/월	/화	/수	/목	/금	/토	
영유아 안전	차량 외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차량 내 소화기·비상약품의 비치여부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차량시동 후 엔진 및 각종 계기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지 확인한다.							
운행 안전	차량 출발 전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문단속을 확인하고 전·후방 시야에 영유아 또는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보육교사 등)이 탑승했는지 확인한다.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영유아가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교통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운행 후 안전	정차는 후방의 차량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는 곳에 한다.							
	운행 중에는 휴대폰,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타이어 압력 및 트러는 양호한지 확인한다.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확인한다.							
차량 내 안전	차량 내 영유아가 전원 하차하였는지 최종 확인한다.							

2. 차량 운영(동, 하원) 일지

일자(요일)	구분	운영 시간	탑승 영유아	동승 교사	확인(서명)
/ (월)	등원				
	하원				
/ (화)	등원				
	하원				
/ (수)	등원				
	하원				
/ (목)	등원				
	하원				
/ (금)	등원				
	하원				

※ 출처: 2020 보육사업안내 부록 수정·보완 (보건복지부, 2020)

<통합안전 점검표>

3-4-3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주요 변경 내용 3-4-3-③

③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

변경전	변경후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에 대해 차량 등·하원 지도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 라인 모두 가능) 을 이수 하였으며, 이를 증빙하는 수료증이 있음.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사이버 교통학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및 오프라인 교육)에 한해 인정함.

3-4-3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Q. 3-4-3 어린이통학버스는 없습니다. 견학 시에만 차량을 대여하여 견학을 갑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Ⅰ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Ⅰ

구분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 및 악류의 소용·감염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피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내 몸의 소중한 것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마약·위약·알콜·대치약법 3. 유괴·유괴 대응·구급 4. 유괴·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습관 습득 2. 예방접종의 이해 3. 물에 해로운 약품 위험성 알기 4. 생활환경의 새로운 악류·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 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6. 가정용 화학제품 안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라도 일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 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피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교육 방법	1. 전류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류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류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류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류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주도교육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에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교육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의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NIA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센서 홈페이지에 실시결과 등록)



<영유아 안전교육>

<소방대피훈련>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Q. 3-5-1 안전교육 실행기록은 꼭 보육일지에 기록이 되어야 하나요?

A.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록은 **보육일지 또는 별도의 안전교육일지에 작성,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반별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기준(**교육내용, 실시주기**)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Q. 3-5-1 안전교육 시 개별 활동으로 진행을 하다가 자발적 대그룹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놀이 중 개별 활동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다가 자발적으로 다른 영아들이 관심을 가져서 대집단으로 진행되었다면 **의도적인 대집단**이 아니므로 평정되지 않습니다.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Q. 3-5-1 소방대피훈련에 재난대비훈련을 포함하여 번갈아 진행해도 될까요?

A. 평가 지표에서는 소방대피훈련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훈련 중 영유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진이나 폭설 등의 재난대비훈련은 소방대피훈련에 포함 가능하며 그 외 비상대응훈련은 실시주기에 따라 영유아 안전교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illegible]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연간계획>

<비상시 대처방안>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주요 변경 내용 3-5-2-①

①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변경전	변경후
·안전교육) <u>원장, 종일제 보육교사</u>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u>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원장, 기타 보육교직원 포함)</u>	·안전교육) <u>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연장 보육 전담교사,</u>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u>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원장, 연장 보육 전담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포함)</u> ※ <u>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u>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Q. 3-5-2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은 원장과 보육교사만 받으면 되나요?

A.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이므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원장, 보육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포함) 이외에 조리원, 차량기사, 사무원 등 임용된 기타 보육교직원도 모두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또는 자체교육 등의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5-3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비상시 안전설비 관리-피난설비,소화설비, 경보설비 >

영역 4.

교 직 원

평가지표

- 4-1. 원장의 리더십
- 4-2.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영역 등급기준

우 수 - 4개의 평가지표 중 '우수' 지표가 3개 이상
보 통 -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 4개의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 지표가 1개 이상

4-1-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

주요 변경 내용 4-1-1-③

③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변경전	변경후
<u>평가 직전 월까지</u>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대상) <u>종일제 보육교사</u>(교사 겸직 원장 제외)	<u>평가 월까지</u>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대상) <u>담임교사</u>(<u>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u>) ※ 교사 겸직 원장 제외

4-1-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

Q. 4-1-1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전체 교사 중 현장평가 해당 월까지 2년 이상 근속한 교사의 비율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현장평가를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2018년 5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인 경우 인정합니다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

Q. 4-1-1 원장은 전문가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가에서
평가 지표교육 하나만 들어도 되나요?

A. 평가 지표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에 포함**되며 이외에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과 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관련 교육에 다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Q. 4-2-2 교재교구 등 어린이집 물품을 보관해두는 장에 여유 칸이 있는데, 그 공간을 교사가 개인사물함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 사물함은 교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장소(보육실, 교사실 등)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물품 보관장의 칸이 분리되어 있어 한 칸에는 어린이집 물품을 보관하고 나머지 한 칸에 교사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면 개인사물함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때 바구니나 칸을 이용하여 교사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명이 한 사물함을 공동 사용하거나 교재교구 등을 함께 보관해두는 경우는 개인사물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4-2-3 정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입니다. 화장실이 두 곳이고, 변기는 성인용과 영아용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인용 변기가 별도로 있어야 하나요? 또한 성인용 세면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부모와 보육교직원 등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인용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 어린이집 내 화장실(변기)이 1개인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는 평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영아가 성인용 세면대와 변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 보조변기와 안전발판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안전발판은 세면대와 변기에 각각 마련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4-3-1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주요 변경 내용 4-3-1-③

③보수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변경전	변경후
- 임금의 경우,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 집이라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최저임금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설명자료 참조	-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사업안내에 규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교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임금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u>반드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u> <신설> 대상) 고용된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Q. 4-3-1 보육일과 중에 교사 휴게시간을 가져도 되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보육일과 운영에 차질이 없고, 책임 있는 성인의 보호 하에 해당 반 보육이 가능한 상황에서 융통적으로 일과 내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Q. 4-3-2 교직원들에게 안내할 만한 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련 교육이나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교직원 전문상담(심리상담) 서비스
- 한국보육진흥원 : 교사인성교육(마음성장프로젝트)
-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자건강센터 : 심리검사 및 상담 서비스

Q. 4-4-1 1급 승급교육을 신청하였으나 정원 마감으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직무교육을 들어도 인정이 되나요?

A. 평가 지표에서는 원장과 교사의 직무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대신에 승급교육을 받은 것은 인정되며 정원 마감으로 승급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면, 직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4-4-2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4-4-3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식

 상호작용 관찰 및 지원

※ 교사 개별로 마련

대상

일시		관찰자	
관찰 내용			
평가 및 지원			

Tip

- 개별 보육교사의 상호작용 관찰 및 지원 업무 수행 평가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보육교직원 평가 관리 내용 포함
- 원장, 외부전문가 등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및 놀이 진행,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등을 관찰하고 지도한 후 기록

※ 출처 : 2020 보육사업안내 부록 수정 보완 (보건복지부, 2020)

<상호작용 관찰 및 지원>

서식

 교사 근무 평가

※ 교사 개별로 마련

대상

일시		평가자	
평가내용 (※원 상황에 맞게 작성 가능)			
		매우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미흡
			미흡
업무 태도		()	()
		()	()
		()	()
		()	()
전문성		()	()
		()	()
		()	()
		()	()
원아 관리		()	()
		()	()
		()	()
		()	()
부모와의 관계		()	()
		()	()
		()	()
		()	()
총괄 관계		()	()
		()	()
		()	()
		()	()

※ 출처 : 2020 보육사업안내 부록 수정 보완 (보건복지부, 2020)

<교사 근무 평가>